

## I. 협상 경과

- 2001년 DDA 발족으로 협상 본격 개시
  - o 서비스협상은 농업과 함께 UR협상 기설정의제의 하나이며, DDA 협상 의제중 비농산물을 포함한 3개 핵심 시장접근협상의 하나
  - o 협상은 R/O(Request/Offer) 방식으로 진행
    - 12개 분야 155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각국간 요청서(Request)와 양허안(Offer) 교환을 통한 협상 진행
- 그간 서비스협상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규범 등에 비하여 그 진전이 저조
  - o 현재까지 제출된 양허안 수는 74개(EC 25개국 포함 98개국)이며 양허안의 질도 높지 않음.
    - 수정 양허안은 26개(55개국) 제출
  - o 이는 현행 양자 R/O(Request/Offer) 협상방식만으로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민감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로 의미 있는 시장개방을 도출하는데 한계 노정

### < 우리협상 동향 >

- o 우리나라는 36개 국가에 대해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5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
  - 35개국과 총 99회 양자협상 개최
- o 2003.3월 1차 양허안(Initial Offer) 제출
  - 법률, 교육, 쿼터 등 26개 업종을 새로이 양허 (총 155개 세부업종중 104개 양허)
  -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분야는 기존 양허내용을 개선
  - 시청각 중 영화상영 및 라디오·TV 방송, 보건의료, 뉴스제공업 등은 미 양허
- o 2005.5.31 수정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 Mode 4 전문직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 :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중 10개 직종 양허
  - 기술적 투명성 및 명확화 제고
  - 2차 양허안 전문을 DDA 홍보용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

-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양자 R/O 방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량적 목표 등을 설정하는 보완적 협상방식 마련에 집중적인 논의 진행
  - o 브라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개도국들의 강한 반대로 홍콩 각료회의에서 수량적 목표 채택은 실패하고, 당초 선진국들의 목표에 비해 약화된 형태로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
- '05.12.18 홍콩각료회의에서 양허안 개선 목표 및 복수적 R/O 협상 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문안 부속서(C) 채택

### ※ 복수적 R/O

- o 기존의 개별국가대 개별국가의 R/O 대신 복수의 국가가 특정국 특정서비스 분야 개방을 집단적으로(collectively) 요청하는 협상 방식
- o 그간 비공식 협의 그룹으로 활동해온 분야별 Friends 회의를 중심으로 분야별 복수적 양허요청안이 작성되어, 06.3/4월 협상부터 복수적 R/O 협상 시행

### 홍콩각료회의 서비스부속서 평가

- 양허안 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도입
  - o 각 Mode별 양허수준 목표 제시
    - Mode 1 : 현재 개방수준 양허, 현존 상업적요건 철폐
    - Mode 2 : 현재 개방수준 양허
    - Mode 3 :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경제적수요심사(ENT) 철폐(감축) 등
    - Mode 4 : 계약서비스공급자(CSS)·독립적전문가(IP) 양허, 경제적수요심사(ENT) 철폐(감축) 등
  - o 각 회원국의 분야별, Mode별 양허 기대수준을 정리한 의장 TNC 보고서(TN/S/23)를 협상시 참고로 활용
    - 법률, 통신, 시청각, 교육, 에너지, 환경, 금융, 의료 등 19개 분야 및 Mode1·2, Mode 3, Mode 4
- 복수적 R/O의 도입근거를 마련
  - o 양허요청국 및 요청대상국의 분야별 전문가간 직접적 논의 촉진 도모
- 향후 협상작업 일정 수립
  - o 복수적 R/O 양허 요청 : 2006.2월 이후
  - o 제2차 수정 양허안 : 2006.7월
  - o 최종 양허안 : 2006.10월
- 평가
  - o '05.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서비스 부속서가 합의로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개도국들의 강한 반발로 수량적 목표(numerical target)가 포함되지 못하였고, 복수적 R/O 협상방식 또한 그 구속성이 약화되어 당초 주도국들이 추구했던 목표 수준에 미달하였으나, mode별 양허수준의 목표 도입, 복수적 R/O 등은 향후 서비스 협상의 진전을 이루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

- 홍콩 각료회의 이후 '06년에 2회, '07년에 5회 및 '08.3월 등 총 9차례에 걸쳐 각 1-2주간 서비스 시장접근 협상 cluster 개최
  - 현재 양자협상, 복수적 R/O 협상을 병행하며, 각국의 양허 개선 계획 협의 지속
- 우리나라는 총 21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는 양허 요청국으로, 9개 분야에는 요청 대상국으로 협상에 참여

#### 복수적R/O 우리나라 참여 현황

- 양허요청국으로 참여한 분야(10)
  - 건축/엔지니어링, 컴퓨터서비스, 통신, 건설, 환경, 금융, 해운, 에너지, MFN 면제, 유통
- 양허요청을 받은 분야(8)
  - 법률, 우편/쿠리어, 시청각, 교육, 항공운송, 물류, 국경간공급(Mode 1&2), 상업적주재(Mode 3), 관광
- 양허요청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분야(2)
  - 자연인이동(Mode 4), 농업관련 서비스

### 3. 최근 동향

#### 가. 시장개방(양허) 협상

##### (1) 최근 동향 : 소규모 각료회의(2008.7월) 계기 Signaling Conference

- '07.10월부터 서비스 텍스트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2008.7월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서비스 각료회의(Ministerial Signaling Conference) 개최
- 다자차원의 서비스 텍스트 협상과 복수국 차원의 서비스 각료회의가 dual track으로 진행

#### (서비스 텍스트 협상)

- 현재 '08.2.12 제출된 서비스 텍스트 의장보고서(chairman's report)를 토대로 협상

- 의장 report는 1)미국, EC, 우리나라 등 ginger group이 공동으로 제안한 텍스트 제안서, 2)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 제안서 3)홍콩, 싱가포르 등 중간 진영 국가들이 제안한 제안서 등 3개 텍스트 제안서에서 주요 element들을 추출하여 작성

※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level of ambition과 political guidance를 서비스 텍스트에 명시하자는 ginger group 제안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서비스 텍스트 의장보고서 주요 내용

- 서비스 협상의 원칙
  - Guidance : DDA의 여타분야와 same level of ambition/political will로 협상 추진
  - 협상의 목표: 점진적인 자유화 수준 제고를 통한 경제 발전
  - 협상의 원칙
    - 어떠한 서비스 분야/모드(mode)도 배제 안 함.
    - 가능한 최대한도로 deeper/wider commitments
    -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현 개방 수준 양허 및 무역장벽 잔존 분야 추가 개방 (ginger group 제안 사항)
    - 개도국 관심 분야인 mode 1, 4 개방 (인도 등 개도국 제안 사항)
    - 개도국 관련 flexibility (발전 정도, 규제 역량, 국가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양허 수준 실현)
- 국내규제 규범 및 GATS Rules 협상
  - 국내규제 규범 제정 DDA 타결시 완료
  - GATS Rules 협상 노력 지속 전개
- 양허 협상 타결 시한
  - 수정양허안 및 final draft schedule [ ]까지 제출 (구체적인 시한 설정 미합의)
- LDC 모델리티
  - waiver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수정양허안 제출 시한 전에 waiver의 구체적인 원칙, 성격에 대한 협상 완료
- 개도국 관련 지원
  - small economies, S&D, 신규가입국에 대한 고려
  - WTO 사무국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 서비스 text에 대한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쿠바, 니카라과의 반대 입장(각주)
  - 서비스 text에 대해 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홍콩 각료선언에 명시된 사항 외에 서비스 협상의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할 mandate 부재

## (각료급 시그널링 회의 개최)

- 소규모 각료회의 계기 7.26 Lamy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
  - 개최목적 : 제2차 수정양허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indication
  - 참석범위 : 복수적 R/O 협상에 적극 참여한 30개국
- 주요 논의 사항
  - 향후 수정양허안에 포함될 주요 양허개선 사항(signal)과 함께 자국의 타 회원국에 대한 핵심 양허 요청사항(priority aspirations)을 논의
  - 선진국들은 주로 금융, 통신, 해운 등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프라 서비스 분야의 상업적 주제(mode 3) 추가 개방을 요청하였고,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은 인력이동(mode 4) 및 국경간 공급(mode1)을 중심으로 양허 개선을 촉구
  - 상당수 참가국들은 기존 실무급 양자협상에서 제시된 양허 개선 사항 외에 새로운 개방안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의 진행
    - 특히 미국은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mode 4 추가 개방(단기 취업 비자 확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하였고, EC도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 등 mode 4 관련 추가 개방이 가능하다는 입장 제시
    -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도 선진국 진영의 핵심 관심사항인 통신, 금융 등 분야의 외국인 지분제한 등 mode 3 관련 양허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 제시
  - 우리나라는 타 회원국에 대한 핵심 양허 요청 사항으로 해운, 통신, 건설, 유통, 금융 등 5대 인프라서비스를 제시하고, 특히 이들 서비스 관련 1) 미양허 신규 서비스 양허, 2) 경제적 수요심사 폐지, 3) 신규 상업적 주제에 대한 차별조치 폐지 등을 요청하면서, 아울러 MFN 면제 폐지 필요성도 강조
    - 양허 개선사항으로 1) mode 4 (경영건설링 등 일부 업종 독립전문가 신규 양허), 2) 통신서비스 간접투자 총량제한 폐지, 3) 사업 서비스 양허 범위 확대, 4) mode 1 신규 양허(투자자문업, 사업 서비스), 5) 보험사 외국인 합작투자 제한 폐지를 제시

## (2) 향후 대응방향

- 농업과 NAMA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서비스 시그널링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2차 수정양허안 제출시한을 다시 설정하고,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므로 동 제출시한에 대비한 양허안 작성 준비 필요
  - 제출시한에 맞추어 수정양허안 제출을 준비하되 실제 제출시기는 여타국 동향, 전반적 DDA 협상 진전 상황 등을 고려, 신중적으로 대응

## 나. 국내규제 협상

### (1) 협상 경과

- 시장개방 협상과는 별도로 UR 후속 협상과제로 국내규제 규범제정을 GATS에 규정(제6조 4항)
  - 1999.4월 국내규제 작업반(WPDR : Working party on Domestic Regulations)을 설립, 규범 제정 논의중
    - ※ 홍콩각료회의 선언문에 DDA타결까지 국내규제에 관한 legal text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안을 포함함으로써 2006년부터 본격적인 규범제정협상 전개
- 그간의 국내규제 협상에서는 EC, 미국, 개도국 등 규제 당국자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다자 규범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우리나라, 호주, 홍콩, 스위스 등 수준 높은 규범 제정을 주장하는 국가들간의 대립 지속
- '07.4.18 의장 텍스트가 회람된 이후 본격적으로 조문별 검토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간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텍스트 회람('08.1.23)
  - 의장 텍스트는 필요성 심사의 개념을 non-operative language로 서문에만 반영하며 각 주제별 문안에는 필요성 심사를 삭제하는 등 기존의 미국, 브라질 등 입장을 대폭 수용

- o 수정 텍스트는 큰 내용상의 변화는 없으며, 우리가 요구한 level of ambition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필요성 심사(Necessity Test)】

- 미국, EC 등은 국내규제 규범 본문에의 필요성 심사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서문에서조차 필요성 심사 관련 language를 ‘do not constitute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등 표현으로 약화시킬 것을 주장
- 이에 대해 우리나라, 홍콩, 스위스 등은 disguised restriction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수용할 수 없으며, 필요성 심사의 도입이 필요함을 계속 주장
- ※ 필요성 심사란?
  - 필요성 원칙은 WTO 협정 전반에 산재 (GATT 20조, GATS 6.4조 등)
  - 필요성 원칙의 의미는 Thailand-Cigarettes 사건 패널보고서(BISD 37S /200)를 통해 WTO 법리로 확립
  - ⇒ 즉, 필요성 심사는 최소위반성 요건(least-inconsistent test)으로 해석되어 회원국들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GATT/WTO법에 일치하는 대안조치가 더 이상 없을 경우,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

- ‘08.3.12 의장은 8개 쟁점 사항을 정리하여 회원국에 비공식 회람
  - o disguised restriction의 의미, 국가 정책 목적의 의미, 기술 표준의 범위, 규범의 적용 범위, 공표 방법, 허가 수수료, 국제 표준의 의미,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

## (2) 협상 전망

- 국내규제 규범 제정 협상의 핵심은 각국의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권한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 교역조건 확보라는 2가지 정책목표간의 균형 달성에 있으나,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개도국들과 미국, EC 등이 필요성 심사 도입 등에 부정적이어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합의되기는 어려운 상황
- 차기 WPDR(‘08.5.13-15 예정)에서는 disguised restriction의 의미를 포함한 의장 제시 8개 쟁점 외에도 필요성 심사 도입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

## (3) 향후 대응 방향

- 서비스 교역의 활성화 및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개방 추진 못지않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국내규제 조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감안, 국내규제 규범제정 작업에 능동적으로 대응
  - o 경쟁력 있는 우리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국내규제 제정은 필수적
-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홍콩제안서가 비교적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제안서 공동제안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국내규제 규범 제정 노력 전개
- 핵심 쟁점인 필요성 심사 관련, 미국, EC 및 개도국들의 강경한 반대 입장과 기존의 높은 수준 규범 채택을 주장했던 국가들간의 공조가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협상 추이를 주시하며 필요성 심사 관련 대응 수위를 신중적으로 조절

## 다. 규범제정 협상

- UR 후속 협상과제로 긴급세이프가드, 정부조달, 보조금 등 서비스 규범제정을 GATS에 규정(제12, 13, 15조)함에 따라, 1995.7월 서비스 규범작업반(WPGR : Working party on GATS Rules)을 설립하여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선진·개도국간 입장차이로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서비스 규범협상은 향후 협상일정 및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홍콩각료회의 선언문에 원론적 문구만이 채택됨으로써 금번 DDA에서 규범이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
  - o ASEAN의 주요관심사인 ESM의 경우 ASEAN 측은 비공식협의(informal in formal)를 통해 대안모색등 논의를 진전시킬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진전여부는 미지수

- o 단, 보조금분야의 경우 각국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정보 교환 필요성이 강조되어 향후 보조금 규범의 기초작업이 이루어질 전망

첨 부 : 복수적 R/O협상 분야별 양허요청안 핵심내용

## 【첨 부】

### 서비스 복수적 R/O 협상 분야별 양허요청안 핵심내용

| 양허요청 참여(10)     |                                                                                                | 양허요청 대상(9)        |                                                                          |
|-----------------|------------------------------------------------------------------------------------------------|-------------------|--------------------------------------------------------------------------|
| 분야              | 양허요청안 주요내용                                                                                     | 분야                | 양허요청안 주요내용                                                               |
| 건축·엔지니어링        | 상업적 주재요건, 국적제한, 거주요건, 회사설립 관련 제한, 경제적 수요심사 등의 폐지                                               | 법률                | 외국변호사의 외국법/국제법 서비스 제공,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고용 허용                                 |
| 컴퓨터 서비스         | 컴퓨터서비스 포괄적 양허                                                                                  | 우편·쿠리어            | 특급배달서비스를 포함한 우편 서비스 및 쿠리어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시장접근 허용과 내국민 대우를 양허                 |
| 통신              | 특정사업자망 사용, 상업적 약정에 관한 요건 폐지, 외국자본에 대해 effective control 허용, 서비스 사업자 수에 대한 제한, 국적, 거주에 대한 제한 폐지 | 시청각               | 광고·홍보용 영상물 제작 배급 및 영화·비디오 제작/배급 관련 여타 서비스 등 양허 (외국인 지분제한, 경제적 수요심사 등 폐지) |
| 건설              | 해외소비 허용, 외국인 지분 제한, 상업적 주재형태 제한, 차별적 등록요건·면허절차 등 폐지                                            | 교육                | 고등교육, 기타교육 분야 중 사립교육 양허                                                  |
| 환경              | 환경컨설팅 등 국경간 거래 가능분야 양허, 상업적 주재관련 장벽 철폐                                                         | 항공운송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항공기 운송 서비스 판매 및 판촉, 컴퓨터 예약시스템, 지상조업서비스, 공항운영서비스 양허          |
| 금융              | 회사설립 관련 보장, 내국민대우 제한 폐지, 일부 손해보험 등의 국경간 공급 양허                                                  | 물류                | 화물취급 및 화물운송주선, 철도 및 도로 화물운송, 도·소매 등 기타 물류관련 서비스 양허                       |
| 해운              | 연안수송을 제외한 국제운송, 해운 보조서비스 양허, 복합운송운영 서비스 이용 및 접근에 관한 추가약속                                       | 국경간 공급 (Mode 1,2) | 사업서비스, 통신·유통·환경·금융 등 다수 서비스분야에서 국경간 거래 허용                                |
| 에너지             | 상업적 주재요건,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 외국인과의 합작 요건, 경제적 수요심사 등의 철폐 또는 완화                                       | 상업적 주재 (Mode 3)   | 외국인 지분제한, 경제적수요심사, 상업적 주재형태 제한 등 수평적 양허에서의 Mode 3 관련 제한사항 제거             |
| 최혜국 대우 (MFN 면제) | 시청각 서비스, 금융서비스 및 여타 서비스 등 3개분야로 구분, 총 16개국의 74개 MFN 면제 조치 폐지 요청                                | 관광                | 음료 제공 서비스 완전 양허                                                          |
| 유통              | 최장 [X]년으로 시한을 설정하여 제한없는 양허                                                                     |                   |                                                                          |